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27

발의연월일: 2020. 10. 15.

발 의 자:김정호·허종식·황운하

김성환 · 정춘숙 · 송갑석

김병욱 • 박재호 • 윤후덕

이학영 · 앙이원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, 국내복귀기업,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인투자의 유치, 무역의 진흥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출·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완화하고,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을 입주가능 업종으로 추가하고,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및 제20조).

법률 제 호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의2 중 "말한다)"를 "말한다. 이하 같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자로서"를 "자 또는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자로서"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제13조제7항"을 "제13조의2제1항"으로, "제9항에"를 "제3항에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국내복귀기업
- 2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입주 자격) ① 자유무역지	제10조(입주 자격) ①
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자로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	1의2
는 국내복귀기업(「해외진출	
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	
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원대	
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	
기업을 <u>말한다)</u> 으로서 복귀	<u>말한다. 이하 같다)</u>
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	
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	
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	3
업종(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	
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	
한다)의 사업을 하려는 <u>자로</u>	<u>자 또</u>
<u>서</u>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	는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
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	따른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사
자	업을 하거나 첨단제품을 생산

4. ~ 8. (생 략)

② (생략)

제20조(임대료의 감면 등) ① 관 제 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「외국인투자 작진법」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 13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<u>하는 자로서</u>
4. ~ 8. (현행과 같음)
① (현행과 같음)
∥20조(임대료의 감면 등) ①
340-
제13조
<u> 의2제1항</u> <u>제3항에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
체의 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1. 국내복귀기업
2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
른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첨
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